

酒稅事務處理規程 改正으로 본 酒稅行政 方向



안 종 산

〈대한주류공업협회 주류1부 부장〉

술이란 소비에 따라 社會에 미치는 否定的인 側面이 많기 때문에 國民 保健과 酒稅 保全을 위하여 大部分의 世界 여러나라들은 酒類 製造 및 流通過程을 엄격히 規制하고 있다.

최근 國稅廳은 酒類 製造에서부터 都·小賣, 消費에 이르기까지 全 部分을 大대적으로 整備하고 잘못된 부분은 是正하고자 酒稅事務處理 規程과 國稅廳告示 內容등을 改正告示함에 따라 그 主要內容들을 살펴 보면서 금년도의 酒稅行政 方向을 考察하고자 한다.

1. 綜合酒類 都賣業 免許制度 改善

그동안 綜合酒類 都賣業 免許는 每年 1. 1~1. 31日 期間동안 法定 免許 要件(人的 要件, 資本金 要件, 施設 要件, 製造社와의 去來 約定書 1部)을 갖추어 申請하는 경우 特別한 缺格事由가 없는한 모두 免許가 附與 되었으나 앞으로는 免許의 過多한 濫發을 防止하고 地域的으로 適切한 分布가 이루어지도록 免許 要件뿐 아니라 市·郡別로 酒類消費 增加 豫想量에 따라 新規 免許 許容 範圍를 정하여 그 範圍내에 免許가 附與될 수 있도록 綜合酒類 都賣 免許 制度를 改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속사정은 政府의 行政 規制 緩和 措置에 따라 90年 酒類都賣 免許 開放이후 法律的 免許要件만 갖추면 모두 酒類 都賣 免許가 附與되어 過多한 免許 發給으로 인한 業體間의 過當 競爭을 誘發 시킴과 아울러 免許業體의 地域的 分布의 不均衡으로 地域的過當競爭을 더욱 深化 시킴으로 인해 不渡 業體 및 缺損業體數가 每年 增加하는 등 酒類業界의 심각한 經營 惡化로 無資料去來등을 誘發하게 하는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음을 看破하고 이에 國稅廳은 酒類 流通 業界의 健全한 育成 發展과 無資料 去來 行爲등의 歪曲된 去來秩序를 制度的으로 是正하기 위하여 免許制度를 改善시키기로 하고 免許業體의 地域的 分布가

適正하게 維持되고 過渡한 新規免許가 發給되지 않도록 免許制限 基準을 大幅 強化하였다.

○【新規綜合酒類都賣業免許 許容 範圍】
: 제14조 新設

- ① 綜合酒類都賣業免許는 酒稅法 제10조 제10호의 規程에 의하여 販賣의 調整상 市·郡別 新規免許의 許容範圍(T/O)내에서 附與한다. 다만 서울特別市는 隣接한 都市(高陽, 果川, 光明, 九里, 富川, 城南, 議政府, 河南市 및 金浦郡)를 包含한다.(이하 “서울市등”이라 한다.)
- ② 市·郡別 新規免許의 許容範圍 算出은 當該年度 市·郡別 酒類消費增加 豫想量이 地域別 基準 販賣 數量의 2倍를 超過할 때마다 1個業體씩 增加한다.
- ③ 當該年度 市·郡別 酒類消費增加 豫想量은 直前年度의 1人當 平均酒類消費量(年間 總 酒類消費量 ÷ 總 人口數)에 1人當 平均酒類消費增減率(直前3年間의 平均)및 市·郡別 人口 增加數를 곱하여 計算한다.
- ④ 基準販賣數量은 正常的인 酒類販賣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年間 必要한 最小限의 酒類販賣數量으로서 各 地域別로 區分하여 各 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地域(서울市등, 廣城市 및 人口 50만 以上 시) : 870kl
- [나] 地域(人口 10만 以上の 市·郡) 831kl
- [다] 地域(其他地域) : 747kl
- ⑤ 國稅廳長은 每年 5月 31日까지 市·郡別 新規 綜合酒類都賣業免許 許容範圍를 算定하여 稅務署에 下達한다.

위와 같이 免許 許容 範圍의 強化와 아울러 酒類販賣業 免許申請 期間도 當初 1. 1~1.31

期間을 7. 1~7. 31까지로 延期하였으며 事後 提出書類도 當初 3. 31~9. 30로 改正하였다.

2. 酒類免許 申請書 接受 및 處理
와 酒類免許番號의 自動附與

小賣 免許 및 擬制販賣 免許에 대한 處理에 대해 當初 제27조의 全文을 削除하고 새로이 酒類免許申請書 接受 및 處理(제27조 新設)와 酒類免許 番號의 自動附與(제27의 2조 新設), 酒類免許證再交付(제27의 3조 新設), 酒類免許者 電算管理(제27의 4조 新設)를 新設하여 免許者管理에 重點을 두고 있다. 이는 酒類의 흐름을 明確히하여 課稅正常化 方案의 일환으로 活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新設 內容에 대한 全文은 다음과 같다.

○【酒類免許 申請書 接受 및 處理】: 제27조 新設

- ① 稅務署長(民願奉仕室長)은 新規로 酒類産業을 開始하는 자가 酒類免許를 申請하는 때에는 法規에서 정한 書類의 具備與否 및 記載事項의 漏落 有無를 檢討하여 接受한다. 단, 酒類小賣業(擬制販賣 免許業者를 包含한다) 免許申請者는 附加價値稅法에 의한 事業者登錄申請書에 酒類販賣事實을 記載하여 申請할 수 있다.
- ② 稅務署長(民願奉仕室長)은 酒類免許 申請書를 해당 附加價値稅課長에게 即時 引繼한다. 다만 即時 交付대상자는 民願奉仕室에서 處理 후 引繼하여야 한다.
- ③ 酒類免許證의 交付는 다음과 같이 民願奉仕室 및 附加價値稅課에서 交付하여야 하며 이 경우 命令書와 指定書를 함께 交付하고 交付臺帳에 交付日字 및 受領者의 署名 捺印을 받아야 한다. 다만, 免許申請者가

수퍼·連鎖店加盟店으로써 所屬된 本(支)部가 酒類仲介人 免許가 있는 境遇에는 事業者登錄證 餘白에 “所屬된 수퍼·連鎖店 本(支)部로부터 家庭用酒類만 購入하여야 함”이라는 文句를 고무印으로 表示한다.

1) 民願室 即時 交付 對象者

擬制販賣免許 申請者중 即時 交付對象者는 民願 奉仕室에서 酒類販賣 免許에 대한 基本事項을 電算 入力하여 免許 事實을 記載한 事業者 登錄證을 交付한다.

2) 附加價值稅課(間稅課)交付對象者

가. 附加價值稅課長은 民願奉仕室 即時 交付對象者를 除外한 酒類小賣業免許 및 擬制 販賣業 免許申請者에 대하여 法令과 規程에 의하여 審査結果 酒類 免許要件에 適合하면 그 處理 結果를 電算入力하여야 하며 民願奉仕室에서 그 結果에 따라 酒類免許 事實을 記載한 事業者 登錄證을 交付한다.

나. 觀光振興法 제7조 제1항의 規程에 의하여 觀光宿泊業의 登錄事實을 通報받은 때에는 酒類販賣業 또는 擬制 販賣業免許 番號를 電算附與한다.

다. 製造, 都賣(仲介業 包含) 免許申請者에 대하여는 法令과 規程에 의하여 審査結果 酒類免許要件에 適合하면 別途의 酒類免許證을 交付한다.

○【酒類免許番號의 自動附與】:제27조의 2조 新設

① 酒類免許番號는 免許事項을 電算入力하면 電算시스템에 의하여 一連番號順序대

로 自動으로 附與한다.

② 酒類免許番號는 다음과 같이 廳·署別 單位로 免許類型을 大分類하여 一連番號를 附與한다.

가. 廳·署 코드(3자리)

酒類免許番號 附與官署의 廳·署 코드를 附與한다.

나. 免許類型 區分 코드(1자리)

製造 : 1

都賣(仲介業 包含) : 2

直賣場 : 3

荷置場 : 4

小賣(專門·工業用 酒精·觀光振興法에 의한小賣業, 擬制販賣業) : 5 以上

다. 一連番號(5자리)

一連番號는 廳·署別, 免許類型別, 免許番號 附與順序로 00001-99999로 自動 附與한다.

○【酒類免許證再交付】:제27조의 3조 新設

① 事業者가 酒類免許證을 毀損, 紛失로 인하여 酒類免許證을 再交付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書類를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事業者가 事業者登錄證 再交付 申請時에 酒類免許證 再交付 事實을 表示하여 提出한 때에는 酒類免許證 再交付 申請書를 提出한 것으로 본다.

• 酒類免許證 再交付 申請書 1부

• 酒類免許證(毀損時에 한함) 原本

② 酒類免許證 再交付 申請을 받은 稅務署長(民願室長)은 附加價值稅課長에게 申請書類를 引繼하여야 한다. 다만, 當初 民願奉仕室 即時 交付該當者에 대하여는 民願奉仕室長이 再交付 후 引繼한다.

③ 附加價值稅課長은 引繼받은 再交付 申請書類를 제27조 제3항을 準用하여 處理하

여야 한다.

○【酒類免許者 電算管理】: 제27조 新設

- ① 稅務署長(附加價值稅課長)은 酒類免許者의 新規 및 變動에 관한 事項과 酒類會社의 任員 및 株主名單을 電算入力하여야 하며 事業者登錄番號와 連繫하여 電算管理 함으로써 免許業務에 活用한다.
- ② 稅務署長 및 地方廳長은 酒類免許者의 每月 1회 電算出力되는 免許臺帳(類型別)과 免許現況(類型別, 市道別, 署別)을 編綴, 管理하고 免許業務에 活用한다.

3. 酒類 輸入業者의 見本酒 提出 : 제38조 2항 新設

「酒類 輸入業者는 最初로 輸入하는 酒類의 見本(酒種別)을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稅務署長은 이를 遲滯없이 國稅廳 技術研究所長에게 分析 依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規制는 國際開放化 時代를 맞아 無分別하게 輸入되는 酒類를 分析하여 國民保健과 健康을 위해 바람직한 條項으로 볼수 있다.

4. 規制緩和 側面的 考察

- 商標 使用 또는 變更申告(제45조4항)를 10日前까지의 申告를 2日前(最初로 使用하는 商標 또는 主要圖案의 變更時에는 10日前)으로 緩和하였으며
- 出庫價格 變更 申告(제70조3항)도 10日前까지를 2日前까지로 緩和하였고
- 酒類 製造者는 事前에 國稅廳長의 承認을 받아 原料用酒類를 製造하여 裸酒 狀態로

酒類 製造者에 販賣할 수 있도록 規程을 新設하였음(70조6항)

- 荷置場을 共同 使用하는 경우에는 그 荷置場 共同使用者의 車輛에 한하여 共同荷置場 管轄 稅務署長의 承認을 받아 共同 配送할수 있도록 新設(제76조3항)
- 稀釋式 燒酎 購入 制度의 全文을 削除한 것은 憲法裁判所의 違憲 判決('96. 12. 26)로 決定됨에 따른 것이다.

5. 調査業務의 強化

○【酒類都賣業者등의 去來狀況 提出】: 제82조 新設

- ① 綜合 酒類都賣業者(輸入業者 包含)는 新規로 去來하는 小賣業者와 去來中繼한 小賣業者의 名單을 綜合酒類都賣業者 및 輸入業者 管轄稅務署長에게 每分期末 翌月 10일까지 提出하여야 한다.
- ② 슈퍼·連鎖店 本(支)部는 加盟店의 加入 또는 解約 狀況을 슈퍼 連鎖店本(支)部 管轄稅務署長에게 每分期末 翌月 10일까지 提出하여야 한다.

6. 不誠實者 管理

○【免許取消者 및 停止處分者의 名單通報】: 제100조 新設

「稅務署長은 酒類都賣業者와 슈퍼·連鎖店 本(支)部중 그 免許가 取消된 者및 販賣業의 停止 處分을 받은자의 名單을 處分 즉시 該當 酒類業團體에 通報하여 不實去來 防止資料로 活用토록 한다.」

○【酒類都賣業者別 去來 小賣業者 電算管理】:제101조 新設

- ① 稅務署長(附加價值稅課長)은 酒類都賣業者(수퍼·連鎖店 本(支)部 및 酒類 輸入業者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別로 去來 小賣業者 및 去來中繼小賣業者 名單을 電算入力하여 酒類小賣業 免許者와 去來都賣業者의 關聯事項을 電算照會하여 活用한다.
- ② 稅務署長은 小賣業者의 「廢業者 및 取消者 名單」을 分期別로 電算出力하여 酒類去來 都賣業者들에게 每分期末 翌月 10 日까지 通報함으로써 小賣業者 管理에 活用토록 한다.

7. 申告管理 制度

稅務署에서의 行政事項으로 다음 事項들의 業務 要領을 大幅 改正하였으나 이內容은 省略하기로 하겠다.

- 申告書接受 電算處理 業務
- 申告書 誤謬訂正 業務
- 申告·納付資料 대사 業務
- 申告實績등 管理
- 酒類免許 不許者 電算管理
- 輸入資料의 出力
- 酒稅 業務의 調査事務 電算管理 要領 業務

8. 告示內容 改正(酒類去來秩序 確立에 관한 命令委任 告示)

〈酒類 製造業者 및 輸入業者가 지켜야 할 사항〉

- ① 去來 相對方의 意思에 반하여 注文하지 않은 酒類나 注文量 以上の 物量을 供給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無資料 덤핑去來 및 偽裝去來를 하지 아니할 誠實한 者에게 正常販賣能力에 맞는 適正物量만을 供給하여야 합니다.
- ③ 酒類去來約定, 去來約定書를 發給 또는 去來를 條件으로 하여 去來相對方으로부터 酒類販賣代金이나 負債와 關聯되지 않는 金品이나 施設 등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 ④ 稅務署長이 酒類流通 正常化를 위하여 製造·輸入業者의 去來相對方에 대한 供給物量의 減量을 要請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⑤ 稅務署長이 無資料 酒類 團束結果 固置한 酒類를 當該 酒類製造 輸入業者로 하여금 引受토록 要請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⑥ 酒類供給과 關聯하여 獎勵金을 또는 手數料 등의 名目으로 金品 및 酒類 提供 또는 外上賣出金을 輕減하거나 耐久消費財(쇼케이스, 看板 등)를 供給함으로써 酒類去來秩序를 紊亂시키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新設)
- ⑦ 酒類 賣出을 伸張시킬 目的으로 去來 相對方과 談合에 의해 酒類 販賣計算書 또는 稅金計算書를 미리 作成하여 交付하고, 酒類는 追後에 出庫시킴으로써 無資料 去來를 助長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新設)

〈綜合酒類都賣業者 特定酒類 都賣業者(酒精都賣業者 除外), 輸入酒類 專門都賣業者 및 酒類 仲介業者가 지켜야 할 事項〉:(全文新設)

- ① 去來相對方의 意思에 반하여 注文하지 않은 酒類나 注文量 以上の 物量을 供給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無資料 덤핑去來 및 偽裝去來를 하지 아

니할 誠實한 者에게 正常販賣能力에 맞는 適正物量을 供給하여야 합니다.

- ③ 酒類 供給과 關聯하여 獎勵金 또는 手數料 등의 名目으로 金品 및 酒類提供 또는 外上賣出金을 輕減하거나 耐久消費財(쇼케이스, 看板 등)를 供給함으로써 酒類去來秩序를 紊亂시키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酒類製造者와 談合에 의해 酒類販賣計算書 또는 稅金計算書를 먼저 交付받고 酒類는 追後에 供給받음으로써 無資料 去來를 助長하는 行爲를 하여서 아니됩니다.

이상과 같은 改正內容을 綜合 檢討하여 보면 國稅廳 當局은 酒類 流通의 秩序 確立을 위한 免許業務管理과 電算管理業務의 強化로 今年부터 酒類에 대한 管理監督을 徹底히하고 酒類去來 秩序를 바로잡고자하는 意志와 強力한 團束이 豫想되는 한해가 될 것 같은 豫感이 든다.

國內 酒類流通 構造를 보면 一旦 製造場에서 生産된 酒類는 1차거래선인 都賣商으로 出庫時 모두 國稅廳 當局에 申告를 하기 때문에 無資料가 發生할 수 없다.

問題는 1차 都賣商에서 小賣商으로 넘어가면서 一部는 都賣商에 의해 또 一部는 小賣商들에 의해 物量이 중간 都賣商에게 넘어가면서 얼굴없는 商品이 탄생 되는것이 보통이다. 이는 製造場에서 市場賣出(占有比 增加)을 늘리기 위해 都賣商에 過多出庫하는데서 原因이 되기도하지만 都賣商들이 商品力이 강한 製品을 받기 위해 非人氣酒類를 덤으로 받는 過程에서 在庫品이 倉庫에 쌓이고 또한 支給해야

할 어음이 期日은 到來하는 데다 小賣店들은 人氣酒類이외에는 받기를 꺼려하고 있어 結局 都賣業體들은 實際 出庫價格보다 턱없이 낮은 價格으로 無資料 市場에 흘려보내는 境遇가 있고, 小賣商들의 경우도 都賣 業體로 부터 받아놓은 物量이 販賣되지 않으면 倉庫에 쌓아놓기 보다는 血값에 無資料市場으로 放出하여 現金化 하는것이 有利하기 때문에 去來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一部 小賣商(飲食業者 包含)들은 物件을 받아놓고 자료를 받지않으려는 忌避現象으로 부득이 都賣商들은 小賣商이 받지않은 資料를 少額 分散處理하는 惡循環의 連續으로 無資料 酒類市場이 生成된다고 보겠다.

이에 國稅廳은 無資料 酒類를 根絶하기 위해 94年度에 無資料 酒類市場에 대해 檢察과의 대대적인 合同團束을 벌여 拔本塞源하다시피 했으나 歲月이 흐르면서 無資料 酒類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그 根本적인 解決策으로 國家免許業體인 酒類業體들의 過當競爭으로 基因된 것으로 判斷하고 酒稅事務處理規程을 大幅 改正 強力한 團束과 아울러 行政強化가 豫想되는 어려운 한 해가 될것이 確實하다고 보겠다.

酒類業界도 이와같이 政府施策에 積極呼應하고 販賣戰略을 대폭 修正하여 販賣增大 및 市場占有率 提高를 위한 過度한 出庫와 外上販賣, 割引販賣 去來先支援行爲등으로 인한 제살까아먹기식의 過渡한 競爭을 止揚하고 正常的인 酒類 流通秩序 確立으로 企業 經營改善 및 品質改善등에 努力 하는등 서로간 相扶相助하는 健全한 酒類業界의 雰圍氣를 造成하는 契機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酒類業界 從事者로서의 솔직한 바램이라 하겠다.